(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)

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뒷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국외부재자신고서

접	접수번호	
	접수일자	
수	접 수 자	(서명)

<앞쪽>

성 명 ¹)	한	글			ड्र	¥	ş			영 (대 ⁻	문 문 자)		40	NG	<i>GIL</i> -	DONG	
여 권	Ę	컨	ġ	J	R	7	7	o	0	o	o	0	*	※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기재합니다.				
		둥		주 민 번	등 록 호	7	0	0	/	0	1	-	1 0	o	0	0	0 0	
주 민	Ţ		록	주 (주민등	소 록표상)	73	'>/ ((시·도)	Ω¢	ই	(구·시·	군)	(음. 독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文学	(대 <u>호</u>	라로길) 44	
연 라 처 ※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(·번호 ²⁾ 직장 등)		(국 /] 가 번 호)			(지	역 번 호)			(전 화 번	호)		
	<u>-</u> 휴	F대전	화번호 ²⁾															
			우편 ³⁾ mail)	necgokr@hanmail.net														
국 외 거 소 ⁴⁾ (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) ※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	거류	국명	CHINA 우편번호 100						100								
		<u>ح</u>	NO.ZO. DONGFÁNGDONGLU CHÁOYÁNG DISTRICT. BEIJING									공관을 거소로 신고할 사람 (☑표한 후 "주소" 칸에 공관명만 기재)						
		기재	주 소		· <i>[k/</i> 國		市	朝陽	區	東方	東路	20 ⁻	号)		투표예정공관 ⁵⁾			

본인은「국적법」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「공직선거법」제218조의4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며,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, 주민등록정보, 수형정보,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약

신 고 인⁶⁾ : **볼 볼 통**

(서명



과천시장 귀하

※ 유 의 사 항

- 1. 이 신고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불이익(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미등재,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습니다.

※ 작성요령

- 1. "성명" 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(영문포함)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.
 - ☞ 다만,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2. "전화번호"와 "휴대전화번호" 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·사무실 등의 전화번호 (국가번호-지역번호-전화번호)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 - □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 요건확인,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, 투표기간·장소 등 안내,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됩니다.
- 3. "전자우편(E-mail)" 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・발송하는 정당・후보자 정보자료 송부,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여부 통지, 이의신청 결과 안내, 투표기간・장소・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·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- 4. "국외거소" 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대문자(현지어 함께 기재 가능)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 - □ 다만, 직장·생업·이사·주소불확정·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**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**사람은 공관을 거소지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☑ 표시 후 "주소"칸에 공관명만을 적습니다.
- 5. "투표예정공관" 칸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.
- 6. 끝부분의 "신고인"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